

**카이퍼의 국가론 사상을 통해 본
현대 한국 개신교의 정치적 참여***
- 영역주권과 저항권을 중심으로

이재욱 (신칼뱅주의 연구소 대표)

- I. 들어가는 말
- II. 카이퍼의 국가론: 영역주권론과 저항권
 - 1. 영역주권론의 신학적 기반
 - 2. 국가의 외과적 봉대 개념과 권력의 한계
 - 3. 저항권 발동 조건과 하급 행정관 이론
- III.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 비교 분석: 영역주권과 저항권의 적용 양상
 - 1. 분석의 범주와 자료
 - 2.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대응: 영역주권의 적용
 - 3. 비상계엄에 대한 대응: 저항권의 전개
 - 4. 비교 분석: 비대칭성의 확인과 다층적 원인
- IV. 신학적 평가와 건강한 정치 참여를 위한 대안
 - 1. 영역주권의 한계성과 책임성 망각: 자율성과 책임의 분리
 - 2. 저항권의 정치적 도구화: 이중 기준의 신학적 문제
 - 3.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원칙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6.65.15>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B5A17015698).

• ABSTRACT •

**Kuyper's Theory of the Stat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Modern
Korean Protestantism: Focusing on Sphere Sovereignty and the Right of
Resistance**

Director, Lee, Jae wook (Institute for Neo-Calvinism)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 political engagement of contemporary Korean Protestantism rests on consistent theological principles, employing Abraham Kuyper's concepts of sphere sovereignty and the right of resistance as its analytical framework. Two contrasting cases are selected: the government's quarantine measures restricting worship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0-2021) and the emergency martial law declared on December 3, 2024. The theological discourse mobilized in each case is compared through primary sources, including official denominational statements, academic forum proceedings, and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nalysis reveals a clear asymmetry. Major conservative denominations and umbrella organizations invoked sphere sovereignty swiftly and forcefully against restrictions on worship, yet remained silent or withheld judgment before a crisi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This study argues that structural factors alone cannot justify the difference, which stems rather from an inadequate theological grasp of the accountability inherent in sphere sovereignty and the universality of the right of resistance. On this basis, it proposes three principles for a Korean reconstruction of Kuyper's thought: the universal extension of the subjects of sphere sovereignty,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right of resistanc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ccountable autonomy.

Key words: Abraham Kuyper, Sphere Sovereignty, Right of Resistance,
Korean Protestantism, Political Engagement

I. 들어가는 말

문화선교연구원, 목회데이터연구소, 한반도평화연구원이 2025년 1월 전국 개신교인 1,000명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조사에 따르면, ‘매우 보수’ 성향 성도의 43.6%와 목회자의 54.8%가 정치 유튜브를 정치적 견해 형성의 주된 매체로 꼽았다.¹⁾ 이 결과는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가 신학적 성찰보다 특정 미디어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²⁾ 이러한 문제의식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12.3 비상계엄이라는 두 사건에 대한 개신교계의 대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종교시설 방역 조치(2020년 하반기 수도권 대면 예배 금지 등)에 대해 상당수 보수 교단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를 교회의 고유 영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해로 규정하며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영역주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원용했다.³⁾ 반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그 위헌, 위법성이 사법적으로 확정된 사건)⁴⁾에서 보수 교단들의 대응

1) 김동규, 2025년 5월 20일, “개신교인 정치 성향 중도 38% 최다… ‘매우 보수’ 13.5% 그쳐,”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7641444>, 2026.05.01. 접속; 정하라, 2025년 1월 20일, “한국교회 교인 37.8% ‘중도’…다양한 정치성향 혼재,” 「아이굿뉴스」,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025>, 2026.05.01. 접속

2)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보라. 백광훈, “2024.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 〈개신교인의 정치문화 형성과 지형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62(2025), 159-196. 특히 170-172.

3) 정성구, “영역주권(領域主權),”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 그 현대적 의미」 (기독교학술원·온누리교회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 자료집, 2020년 11월 26일), 7-10; 김영한,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신칼빈주의적 도전이다,”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 그 현대적 의미」, 15-45.

4)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은 상대적으로 신중했다. 계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탄핵이라는 제도적 저항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소극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⁵⁾ 이러한 대응의 불일치는 중요한 신학적, 윤리적 질문을 제기한다. 영역주권과 저항권 개념이 일관된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본고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론을 이론적 토대로 설정하고, 영역주권론과 저항권 개념을 핵심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⁶⁾ 카이퍼는 네덜란드 수상(1901-1905)을 역임한 신학자이자 정치가로, 그의 국가론은 1916-1917년에 출판된 『반혁명 국가학』⁷⁾에서 방대하게 전개되었다. 이 저서에서 카이퍼는 영역주권의 원리를 국가론에 적용하였고, 국가가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때 합법적 기관을 통한 제도적 저항이 정당화된다는 저항권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 두 개념은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가

무력화 시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5) 박동미, 2025년 1월16일, “한교총 ‘비상계엄이 촉발한 혼란… 빠른 법적, 정치적 해결’을 촉구,”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478951>, 2026.05.01. 접속
- 6)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밝혀 둔다. 본고에서 ‘영역주권’은 각 삶의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고유한 주권이라는 원리 자체를 가리키며, ‘영역주권론’은 이 원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카이퍼의 이론 체계를 가리킨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 구분에 따라 두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 7) Abraham Kuyper,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최용준, 임경근 공역. 『반혁명 국가학 1』(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23). 참고로 반혁명 국가학은 ‘반·혁명’(anti-revolutionary) + ‘국가학’(Staatskunde)의 합성어로, 피조물을 창조주로부터 분리하려는 프랑스 혁명의 근본 전체에 대한 화란 칼빈주의자들의 반대를 의미한다. 카이퍼는 이 개념을 통해 신정정치를 거부하면서도 모든 정치적 권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개혁파 신학 원리에 기초한 정치철학을 제시했다. 이는 세속적 혁명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위계 모델을 모두 거부하고, 근대 국가와 통치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공하려는 시도였다. 참고, John Bolt, *A Free Church, A Holy Nation: Abraham Kuyper's American Publ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1), 311; Abraham Kuyper,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ed. James D. Bratt (Grand Rapids: Eerdmans, 1998), 284-285.

일관된 신학적 원칙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상황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를 평가하는 이론적 준거가 된다. 카이퍼의 정치사상에 관한 기존 연구는 초기 정치사상과 권력분립론,⁸⁾ 『반혁명 국가학』의 국가-교회 상호 자유 개념,⁹⁾ 국가관 전반의 고찰,¹⁰⁾ 영역주권론의 한국적 수용 과정,¹¹⁾ 교회-국가 갈등 해결책 모색¹²⁾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이론적 토대 마련에 집중되어, 구체적 정치 위기 상황에서 주요 교계 혹은 교단들이 카이퍼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12.3 비상계엄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국가 권력 작용에 대해 어떠한 신학적 논리로 대응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는 교회의 고유 영역(예배)에 대한 국가 개입 문제를, 후자는 국가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영역주권과 저항권의 적용 양상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대조 사례를 제공한다.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본고는 교단, 연합기관의 공식 성명서 전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 1차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한정하며, 보수/진보 교단 범주는 III장 1절에서 그 한계와 함께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8) 황대우, “아브라함 카이퍼의 초기 정치사상: 1880년의 Ons Program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7/1(2025), 103-130.

9) 박재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반혁명 국가학』에 나타난 국가와 교회의 바른 관계성 고찰,” 『한국개혁신학』 88(2025), 150-184.

10) 최용준,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관에 관한 고찰: 반혁명적 국가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8/1(2023), 297-314.

11) 이국운,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3(2013), 127-155.

12)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의 현대적 의의: 교회와 국가 관계의 관점에서,” 『갱신과 부흥』 28(2021), 215-248.

II. 카이퍼의 국가론: 영역주권론과 저항권

1. 영역주권론의 신학적 기반

카이퍼의 정치신학은 법(law)에 대한 독특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에 게 법은 인간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한 질서로서, 우리와 그분의 관계 및 피조물 간의 상호관계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심판과 회복을 통해 손상된 곳을 복구시키는 것”이다.¹³⁾ 이러한 법 이해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인권 선언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La loi est l'expression de la volonté générale)는 사상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다.¹⁴⁾ 카이퍼는 법의 기원을 인간 이성이나 사회 계약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두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며 무릎 꿇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주님 외에 법의 기원으로 다른 이름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였다.¹⁵⁾ 이러한 법 이해는 영역주권론의 토대가 된다. 카이퍼에 따르면, 하나님은 창조 시에 각 영역 — 가정, 교회, 학교, 국가 등 — 에 고유한 법을 부여하

13) Kuyper, 『반혁명 국가학 1』, 41-42

14) Jean-Jacques Rousseau, “A 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 (1755) and the Social Contract (1762),” in *The Christian Intellectual Tradition from the Reformation to the Modern Era: A Reader and Compan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25), 262. 이것은 루소의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 개념으로 인권선언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법의 정당성을 인민주권에서 도출했다. 이는 법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해한 카이퍼의 개혁주의 법 신학과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카이퍼는 이를 인간 자율성의 절대화이자 신적 주권에 대한 부정으로 간주했다. 그렇지만 카이퍼는 프랑스 혁명의 긍정적 유산(민주주의, 정교분리 등)을 수용했다. 그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혁명의 좋은 열매는 원래 칼빈주의에서 나온 것인데 혁명이 흠친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했다. 참고, James Bratt, “Abraham Kuyper and the French Revolution,” in *Neo-Calvinism and the French Revolution*, ed. James Eglinton and George Harinck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4), 1-12.

15) Kuyper, 『반혁명 국가학 1』, 43.

였다. “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를 통해 정돈되길 원하셨던 관계의 종합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법과 반대인 불법을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을 받았다.”¹⁶⁾ 각 영역은 국가나 교회를 매개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위를 받는다.¹⁷⁾ 이것이 고유 영역 안의 주권, 곧 영역주권의 의미이다.

영역주권론의 신학적 기초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구분에 있다. 카이퍼는 “법은 일반은총 안에서 외적으로 인간 삶의 규범적 틀을 확립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한다.¹⁸⁾ 일반은총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죄의 전면적 파괴를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특별은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이다. 국가는 일반은총의 영역에 속하므로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만 구원의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 구분은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결정적 원리이다. 국가는 외적 질서 유지라는 일반은총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므로, 인간의 영혼 구원이나 신앙고백과 같은 특별은총의 영역에 개입할 수 없으며, 국가가 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식을 규제하려 한다면, 이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카이퍼에게 국가의 존재 근거는 창조 질서가 아니라 타락에서 찾아진다. “죄가 없었더라면 자연스럽게 순전히 내적인 충동, 즉 도덕적 동기만으로도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최대한의 지점까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성취했을 것이다.”¹⁹⁾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외적 강제 없이

16) 위의 책, 115.

17) 이러한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은 이미 1880년 자유대학교 개교연설 『영역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에서 천명되었다. Abraham Kuyper,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박태현 역,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군포: 다함출판사, 2020), 29-30.

18) Kuyper, 『반혁명 국가학 1』, 51.

19) 위의 책, 50.

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다. 국가는 죄의 결과로 생긴 제도이므로, 그 기능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며, 이 제한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상호 자유’로 규정한다. 국가는 교회의 내적 사안(교리, 예배 방식, 조직)에 간섭할 수 없고, 교회 역시 국가의 정치적 결정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분리는 상호 무관심이 아니다. 카이퍼가 강조했듯, “국가와 교회는 나란히 누워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²⁰⁾ 분리는 ‘상생’을 위한 조건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영역주권은 고립이 아니라 조화를 전제한다. 이 조화의 전제 조건을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가족과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행해지고, 그 주권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존중되는 한, 정부는 그 주권 밖에서 모든 것을 각 영역에 자연스럽게 맡길 수 있다.”²¹⁾ 각 영역의 자율성은 무조건적인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준수를 전제로 한다. 자율성과 책임은 분리될 수 없다.

2. 국가의 외과적 봉대 개념과 권력의 한계

카이퍼가 국가를 ‘외과적 봉대’(chirurgisch verband)로 규정한 것은 그의 정치신학에서 가장 빼어난 통찰 중 하나이다. 이 은유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기능의 한계를 동시에 설명한다.²²⁾ 외과적 봉대는 상처를 치료하는 도구이지만 건강한 신체 조직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다리가 골절된 불행한 사람에게 목발을 주고, 다른 방법으로는 더 걸을 수 없는

20) 위의 책, 490.

21) 위의 책, 295.

22) 카이퍼의 개념은 국가를 필요악으로 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도 발견된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 『신국론 제19-22권』 (왜관: 분도출판사, 2004), 제19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을 보라. 이희균 · 성신형, “광장으로 나온 극단주의 개신교 세력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성찰 -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62(2025), 239-259.

사람들에게 외과용 붕대를 감는 것”이다.²³⁾ 국가의 법 집행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형적 행위에 대해서만, 강압적 성격을 띠며 작동한다. 즉 국가 권력은 인간의 외적 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으며, 내적 도덕이나 신앙의 영역에는 접근할 수 없다. 법은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규범이지만, 도덕은 인간 내면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카이퍼는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세 가지 차원에서 체계화한다. 첫째, 기능의 한계이다. 국가는 죄의 결과를 억제하는 소극적 기능만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완전한 사회나 이상적 인간을 창조할 수 없다. “정부가 국가는 삶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발산할 수 없다. 부패를 막고 인간 삶에서 병자들의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유일한 목적이다.”²⁴⁾ 둘째, 영역의 한계이다. 국가는 가정, 교회, 학문, 예술, 산업 등 다른 영역의 고유한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 “가족, 교회 등의 주권적 권위는 정부의 주권적 권위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온다.”²⁵⁾ 셋째, 권위의 한계이다. 국가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법에 종속된다. 따라서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명백히 위반할 때, 그 권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한계 설정은 카이퍼 당대의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프랑스 혁명은 주권의 기원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이성과 일반 의지에서 찾음으로써, 국가가 사회 질서 전반을 재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장하고 있었다. 카이퍼는 이에 대항하여 국가를 그 본래적 제한 기능으로 되돌리려 했다.²⁶⁾ 그러나 외과적 붕대 개념은 국가 권력의 필요성도 동시에 인정

23) Kuyper, 『반혁명 국가학 1』, 325.

24) 위의 책, 327.

25) 위의 책, 291.

26) Bratt, “Abraham Kuyper and the French Revolution,” 7, 10. 카이퍼는 혁명 이후 부르주아지가 국가를 장악하여 약자를 보호하라는 신적 소명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용했다고 비판하였으며, 혁명 원리가 사회 전 영역에 무자비하게

한다. 타락한 세계에서 외적 강제 없이는 최소한의 질서조차 유지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폐지되어야 할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세우신 필요한 제도이다. 다만 그 권위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며, 제한적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할 때, 교회와 시민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카이퍼의 대답이 바로 저항권 이론이다.

3. 저항권 발동 조건과 하급 행정관 이론

카이퍼의 저항권 이론은 영역주권론의 논리적 귀결이다. 만약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한적 권위를 넘어선다면, 그 권위에 대한 저항은 불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된다. 카이퍼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4권 20장을 계승하여, 저항의 주체와 방식을 엄격히 구분했다. 첫째, 개인 신자의 저항이다. 국가가 교회의 자치 영역을 침범하거나 신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때, 개별 신자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거부해야 한다. 이것은 저항권 이론 안에서 부여된 제도적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국가의 명령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신앙적 순종의 귀결이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명예를 거스르는 정부의 명령에 대항하여 순종을 거부해야 한다.”²⁷⁾ 그러나 개인의 저항은 반드시 수동적 저항, 즉 불복종에 머물러야 하며 폭력적 반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민간 시민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오히려 가장 심각한 불의를 감내하고, 참아야 한다.”²⁸⁾ “민간 시

관철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27) Kuyper, 『반혁명 국가학 1』, 706.

28) 위의 책, 643. 카이퍼의 언급은 칼빈의 다음 진술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계속 민간 개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 그들에게는 순종하고 참는 것 외에는 어떤 명령도 주어지지 않았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민의 경우, 그들에게는 순종하고 고난당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명령이 부여된 적이 없다.”²⁹⁾ 카이퍼가 개인의 자발적 저항에 극도로 신중했던 이유는 저항의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하급 행정관(*magistratus inferiores*)을 통한 저항이다. 하급 행정관은 상급 권위의 폭정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중간 시민 관료를 지칭하는 용어이다.³⁰⁾ 카이퍼는 시, 주, 의회, 국회의 권한이 바로 이 하급 행정관의 자율권을 역사적으로 흡수, 계승한 것이라고 서술한다.³¹⁾ 이는 카이퍼가 자기 시대의 의회와 지방 기관들을 하급 행정관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브랫(James Bratt) 역시 카이퍼가 칼빈의 하급 행정관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여러 중재 기관들을 하급 행정관의 현대적 버전으로 보았다고 평가한다.³²⁾ 이에 “하급 행정관은 국민의 양심을 어기는 정부에게 힘으로 저항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다.³³⁾ 이는 개인의 혁명적 봉기가 아니라,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vols. 1-2,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IV.20.31.

29) 위의 책, 644.

30) 종교개혁시대 마르틴 부처는 자치 도시국가 권위로서의 하급 행정관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 정치 발전의 산물로 보았으며, 이들이 상급 권력의 침해로부터 진정한 종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이를 발전시켜, 민중이 선택한 하급 행정관들은 국가 정부에 맞서 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하도록 자동적으로 부름 받았다고 선언했다. Abraham Kuyper,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The Practical Section*, eds. Jordan J. Ballor, J. Daryl Charles, and Melvin Flikenma, trans. Nelson D. Kloosterman and Ed M. van der Maas, Abraham Kuyper Collected Works in Public Theology (Bellingham: Lexham Press, 2020), 3:102; David C. Innes, *Christ and the Kingdoms of Men: Foundations of Political Life*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19), 205; G. Joseph Gatis, “The Political Theory of John Calvin,” *Bibliotheca Sacra* 153 (1996), 456.

31) Kuyper, 『반혁명 국가학 1』, 667-672.

32)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2013), 78-81.

33) Kuyper, 『반혁명 국가학 1』, 706.

합법적 기관을 통한 제도적 저항만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할 때, 곧 국가 권력 자체의 구조적 정당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제도적 저항이 요구된다. 저항은 무정부주의적 반란이 아니라 본래의 질서, 곧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이며, 각 영역이 상호 침범 없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상호 자유의 원리가 파괴될 때 그것을 복원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카이퍼의 영역주권과 저항권은 다음과 같이 종합된다. 각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위를 부여받은 고유한 주권을 가지며, 국가는 죄의 결과를 억제하는 외과적 봉대로서 제한적 성격을 갖는다. 교회와 국가는 상호 책임을 전제한 조화, 곧 상호 자유의 관계에 있다. 저항권은 국가가 영역주권을 침범하거나 헌법적 질서를 파괴할 때 발동되며, 개인 신자에게는 수동적 저항만 허용되고 적극적 저항은 의회, 사법부 등 하급 행정관에 상응하는 합법적 기관을 통한 제도 내 저항으로만 구현되어, 새로운 질서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 질서의 회복을 지향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항권 발동의 두 조건, 곧 교회 자치 영역의 침범과 헌법적 질서의 파괴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후자는 교회 영역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전제하지 않는다. 카이퍼의 사상은 19세기 네덜란드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지만, 국가 권력의 한계 설정, 교회와 국가의 바른 관계,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에 관한 보편적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도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III.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 비교 분석: 영역주권과 저항권의 적용 양상

앞 장에서 정립한 카이퍼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본 장에서는 한국 개신

교가 실제 정치적 국면에서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추적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12.3 비상계엄은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층위가 서로 다르다. 전자는 예배라는 교회 내부 질서에 대한 직접적 제한이었고, 후자는 헌법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사태였다. 이 차이가 교계 대응에 어떤 비대칭을 낳았는지, 그리고 카이퍼의 원칙이 일관되게 작동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본 장의 과제이다.

1. 분석의 범주와 자료

본격적인 사례 분석에 앞서 분석 범주와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본고에서 ‘보수 교단’은 성경관과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태도에서 신학적 보수주의를 견지하며 주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계열의 연합기구에 속한 교단들(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신 등)을, ‘진보 교단’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진영의 교단들(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을 가리키는 관행적 범주로 사용한다.³⁴⁾ 다만 두 가지 단서가 필요하다. 첫째, 신학적 보수성과 정치적 보수성은 논리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뒤에서 확인하듯 복음주의권 내부에서도 계엄에 대해 명확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단체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본고가 확인하는 비대칭성은 보수 교단 전체의 속성이 아니라 주요 연합기관과 일부 대형 교단의 공식적 대응에서 나타난 경향성을 가리킨다. 둘째, 각 교단 내부에는 지도부와 일반 신자, 목회자와 신학자 사이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식 성명에 대한 분석이 교단 구성원 전체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확대

34) 이 구분은 배타적이지 않다.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NCCK와 한교총에 모두 가입되어 있으며 개별 교단 안에도 신학적,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게 존재한다. 본고의 범주는 어디까지나 분석의 편의를 위한 이념형(ideal type)이다.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개신교인의 71%가 예배 중단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는 이 간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³⁵⁾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 국면에 대해서는 계엄 직후 각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23편이 수집, 공개되어 있어 공식 문서에 기초한 텍스트 분석이 가능하다.³⁶⁾ 아울러 방법론적 한계를 미리 밝혀 둔다.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교단이나 기관의 침묵은 그 자체가 본고의 분석 대상이지만, 침묵의 내적 동기는 자료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침묵의 동기를 단정하는 대신, 문서로 확인되는 대응 양상의 차이를 기술하고 그 차이가 카이퍼의 신학적 기준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논증하는 방식을 취한다.

2.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대응: 영역주권의 적용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되고 확장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교계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정부 지침을 따르는 입장이었다. NCCK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진영과 일부 교회들은 공공 보건을 우선시하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했다. NCCK는 2020년 3월 논평에서 교회와 행정당국의 상호이해를 촉구하며 이웃 사랑과 공동선을 신학적 근거로 제시했다.³⁷⁾ 둘째, 방역의

35) 이인창, 2020년 3월 1일, “개신교인 71%, 코로나19 예방 ‘주일예배 중단’ 찬성,” 「아이굿뉴스」,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2695>, 2026.05.01. 접속

36) 뉴스앤조이,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계 성명 모음,” (2024.12.7. 기준 23개 단체 성명 전문 수록) 「뉴스앤조이」,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47>, 2026.05.01. 접속

37) 교회협언론, 2020년 3월 19일, “(논평)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교회와 행정당국의 상호이해를 촉구한다’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http://www.ncck.or.kr/newsView/knc202003190002>, 2026.05.01. 접속

필요성은 인정하되 예배 제한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 경우에는 예배가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며, 국가가 예배 방식을 규제하는 것은 영역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³⁸⁾ 이에 보수 교단 중 상당수는 자체적으로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했다. 셋째, 정부의 방역 조치를 교회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이었다. 대표적으로 사랑제일 교회는 집회 금지 조치에 불복종하며 예배를 강행했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³⁹⁾

이 과정에서 카이퍼의 영역주권 개념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 교회들은 온라인 청원을 통해 “교회 소모임 금지 반대”를 호소했으며, 하루 만에 23만 명이 동의하는 등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⁴⁰⁾ 이러한 반응의 배경에는 정부 조치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었다.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 사황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였고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에 이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 주장을 야기했다. 이러한 인식은 2020년 11월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규제하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한 것이며 “교회의 머리는 대통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으로 나타났다.⁴¹⁾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교수 역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

38) 김영한, 2020년 3월 23일, “[전문] 예배 규제,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7868>, 2026.05.01. 접속

39) 김계연, 2020년 9월 18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8061200004>, 2026.05.01. 접속; 김치연, 2021년 7월 20일, “사랑제일교회, 정부의 방역 지침은 사기...불복종 저항,”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82700004>, 2026.05.01. 접속

40) 동아일보, 2020년 7월 9일, “개신교 빨났다...교회 소모임 금지’ 반대, 23만 청원 하루만에 동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0709/101888803/1>, 2026.05.01. 접속

41) 정성구, “영역주권(領域主權),”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 그 현대적 의미」, 10.

가 연대하여 신앙 영역의 고유한 사항을 존중받을 수 있는 영역주권 장치가 점점 더 강하게 필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⁴²⁾ 영역주권 개념이 방역 조치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로 기능했음을 보여주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19 방역 조치 국면에서 영역주권 담론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동원되었으며, 그 적용 방식은 협력(자체 방역)에서 불복종(예배 강행)까지 스펙트럼이 넓었다. 다만 이 담론에서 영역주권은 교회 영역 보호의 논거로 원용되었을 뿐, 그 전제 조건인 책임적 자율성이 함께 언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비상계엄에 대한 대응: 저항권의 전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결의로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⁴³⁾ 이후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과 계엄의 위법성을 사법적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본절의 분석은 두 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계엄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선고 이전까지의 국면에서는 계엄의 위헌성과 탄핵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당시 교계의 신중한 태도 자체를 사후적으로 확정된 기준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다툼의 시기에 각 진영이 어떤 신학적 언어와 판단 기준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이후 어떤 성찰이 뒤따랐는지는 본고의 분석틀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는 정당한 대상이다.

교계의 반응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었다. 첫째, 에큐메니칼 진영과 진보 성향의 교단들은 사건 직후 즉각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42) 김영한,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신칼빈주의적 도전이다.”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 그 현대적 의미』, 12.

43)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계엄은 같은 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되었다.

교단 차원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기독교대한감리회였다. 감리회는 계엄 선포 약 4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 긴급 성명 “비상계엄 즉각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를 발표하여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정치적 이유의 계엄 선포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헌법 정신에 반하는 독재적 발상으로 규정했다.⁴⁴⁾ NCCK는 같은 날 충무 명의의 공식 입장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무릎 꿇어 사죄하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⁴⁵⁾ 같은 날을 전후하여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서한국,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등 20여 개 교계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으며, 12월 7일까지 그 수는 23개에 이르렀다. 이들 성명의 신학적 근거는 대체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위임된 권력의 한계, 예언자적 증언의 책무,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수호로 요약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비판적 입장이 이른바 진보 진영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복음주의권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2월 4일 성명에서 계엄을 법적 절차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하야와 국회의 신속한 탄핵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⁴⁶⁾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역시 같은 날 계엄 선포를 하나님과 역사 앞에 섰지 못할 대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⁴⁷⁾ 이는 계엄에

44)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즉각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KMC 뉴스」,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145>, 2026.05.01. 접속

45) NCCK, 2024년 12월 4일, “대통령 윤석열-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https://www.kncc.or.kr/newsView/knc202412040002>, 2026.05.01. 접속

46)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합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https://cemk.org/39344/>, 2026.05.01. 접속

47)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2024년 12월 7일, 전문은 뉴스앤조이,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계 성명 모음”(각주 36)에 수록.

대한 평가가 단순한 신학적 보수-진보 구도로 환원되지 않으며, 헌정 질서의 위기 앞에서 판단을 유보하지 않은 흐름이 복음주의권 내부에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요 보수 교단과 연합기관의 공식 대응은 이와 결이 달랐고, 그 양상은 단일하지 않았다. 국내 최대 규모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12월 4일 총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문서는 보수 교단의 대응 논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1차 자료다. 성명은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그 ‘이유’의 진위를 떠나, 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통감하며, 자유와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려와 걱정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북한 공산 세력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가의 안정을 위한 화합과 협력”을 이룰 것을 촉구했으며, 성도들의 기도와 회개, 영적 대부흥을 강조했다.⁴⁸⁾ 텍스트의 차원에서 이 성명의 구조적 특징은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계엄 선포 주체의 헌법적 책임을 특정하지 않고 위기의 책임을 ‘정치 지도자들’ 일반으로 분산시킨다. 둘째, 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결의를 함께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법치 국가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사례”로 묶음으로써, 전자는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고 후자는 그 방어라는 양자의 규범적 비대칭을 중화시킨다. 셋째, 헌정 질서의 위기를 회개와 부흥이라는 영적 위기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치 윤리적 판단을 유보한다. II장에서 확인한 카이퍼의 분석틀, 곧 국가의 헌법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판별하고 제도적 저항의 정당성을 증언해야 할 자리에서, 저항권 담론은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4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국가 비상계엄령 사태에 즈음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성명서,” 2024.12.4. 전문은 다음에 수록. 오종영, “예장합동 김종혁 총회장 국가계엄사태관련 성명서 발표,” 『기독타임즈』, 2024.12.4. <https://www.kidoktimes.co.kr/7921>, 2026.05.01. 접속

같은 날 발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의 총회장 명의 성명은 이와 대조적인 텍스트 구조를 보여준다. 이 성명은 계엄 선포를 “명백한 위헌이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 주체를 대통령으로 특정하여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으며, 교단 신앙고백서의 교회론·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해야 한다-을 판단의 신학적 근거로 명시했다.⁴⁹⁾ 동일한 장로교 정치 구조와 동일한 발표 시점에서 산출된 두 성명의 이 대조는, 총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신속하고 명확한 헌법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통합의 성명 역시 위헌 규정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라는 제도적 저항에 대한 판단은 담지 않았다. 카이퍼의 틀에서 보면 저항권 발동의 조건 충족은 선언하되 그 구체 수단은 명명하지 않은 것이다.

보수 교계 내부의 다른 흐름은 계엄을 초래한 정치적 맥락을 강조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12월 4일 성명에서 비상계엄령 발동의 원인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 위기를 초래한 야당을 비판했다.⁵⁰⁾ 다른 입장은 계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탄핵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기독교학술원은 12월 16일 학술포럼 “한국의 민주정치, 법치, 한국 기독교: 비상계엄, 내란죄?”를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박사는 계엄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⁵¹⁾ 그 근거는 탄핵이 또 다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법 절차를 통한 해결이 더 적절

4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현 시국에 대한 총회장 성명서,” 2024.12.4. 전문은 「컵뉴스」, 2024.12.4일자에 수록. <https://www.cu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5568>, 2026.05.01. 접속

50) 김진영, 2024년 12월 4일, “수기총 등 ‘비상계엄 원인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1906>, 2026.05.01. 접속

51) 김영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한국기독교(비상계엄선포의 법적 고찰 포함),” 「제107회 월례학술포럼 - 한국의 민주정치, 법치, 한국 기독교」 (기독교 학술원 포럼 자료집, 2025년 1월 17일), 41-42.

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국내 최대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교총은 비상계엄 및 탄핵의 위헌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판단을 유보한 채, 계엄이 촉발한 혼란의 빠른 법적, 정치적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밝혔다.⁵²⁾ 요컨대, 계엄 국면에서 교계의 대응은 단일한 양분 구도가 아니라, NCCK의 명시적 탄핵 요구에서 통합의 위헌 규정, 합동의 판단 유보, 한교총의 침묵,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의 야당 책임론에 이르는 연속선 위에 분포했다.

코로나19 국면과 대조적으로, 계엄 국면에서 보수 교계의 공식 문서에는 저항권은 물론 영역주권이나 헌정 질서에 관한 신학적 판단의 언어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정치적 불안정’, ‘법적 절차’, ‘사법적 해결’, 등의 법적, 행정적 언어가 그 자리를 채웠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와 탄핵소추라는 제도적 저항을 수행하고 헌법재판소가 중국적으로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동안, 주요 보수 교단과 연합기관의 공식 문서에서 이 절차의 신학적 의미를 평가한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계엄의 위헌과 위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신학적 성찰은 확인되지 않는다.

4. 비교 분석: 비대칭성의 확인과 다층적 원인

앞서 살펴본 두 사례를 비교하면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패턴 차이가 확인된다. 첫째, 담론 동원의 속도와 강도이다. 보수 교단들은 방역 조치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응하며 영역주권 담론을 전면에서 내세웠다. 반면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약한 반응을 보였다. 둘째, 신학적 언어의 사용 양상이다. 방역 국면에서

52) 박동미, 「문화일보」, 2025.1.16.일자, “한교총 ‘비상계엄이 촉발한 혼란… 빠른 법적, 정치적 해결’을 촉구,” <https://www.munhwa.com/article/11478951>, 2026.05.01. 접속

는 영역주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신앙의 고유 영역 등의 신학적 언어가 적극 활용된 반면 계엄 국면에서는 정치적 불안정, 법적 절차, 사법적 해결 등의 법적 언어가 주로 등장했다. 셋째, 교단별 대응의 분포이다.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보수 교단과 진보 교단이 각각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대립했다. 계엄 사태에서는 진보 교단과 복음주의권 일부 단체, 그리고 예장통합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반면 주요 보수 연합기관과 일부 교단은 침묵, 유보, 양비론 등으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넷째, 제도적 저항에 대한 태도이다. 방역 국면에서 보수 교단들은 정부 지침에 불복종하는 방식의 저항을 일부 실천하거나 지지했으나, 계엄 국면에서 국회가 해체 결의와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동안, 보수 교단의 상당수는 이 제도적 절차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다. 다섯째, 직접성의 차이이다. 교계의 대응 강도는 사안의 헌법적 심각성보다 교회에 대한 직접적 영향 여부와 더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이상의 다섯 가지 패턴은 두 사례에서 교계의 대응 강도와 표현 방식이 뚜렷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를 원칙 적용의 비대칭성, 곧 동일한 신학적 개념이 두 국면에서 서로 다른 조건에 따라 발동된 양상으로 규정하며, 이하 비대칭성으로 약칭한다. 그렇다면 이 비대칭성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단지 원인으로 환원하기보다 복수의 요인이 중첩되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사안의 직접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다. 방역 조치는 예배라는 교회 내부 질서를 직접 규율한 반면, 계엄은 교회의 고유 영역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다. 이 관점에서 보수 교계의 상이한 대응이 원칙의 이중 적용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 영역에 관한 사안에 우선적으로 반응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반대 해석도 가능하다. 나아가 계엄은 6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곧바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라는 제도적 절차로 이관되었기에, 교회가 별도의 신학적 담론을 형성할 시간적, 실천적

공간이 좁았다는 설명 역시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조건에서 예정 통합이 계엄 다음 날 명확한 위헌 판단을 내놓았다는 사실은 이 구조적 설명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 반대 해석을 진지한 검토 대상으로 삼으며, IV장 2절에서 카이퍼의 이론들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평가할 것이다.

둘째, 교단 구조와 연합기관의 조직적 요인이다.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른 총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연합기관의 합의제적 성격은, 회원 교단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을수록 신속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 한교총의 원칙적 입장 표명은 이러한 조직적 제약의 산물로 읽을 여지가 있다. 셋째, 지도자 개인의 영향력이다. 한국 개신교의 정치적 발화는 교단의 공식 기구 못지않게 대형 교회 목회자나 상징적 인물 개인의 발언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공식 입장과 현장 담론 사이의 간극을 낳는다. 코로나19 국면의 예배 강행이 특정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그 예다(III장 2절의 사랑제일교회 사례). 넷째, 미디어 환경이다. 서론에서 확인했듯 보수 성향 교인과 목회자의 상당수가 정치 유튜브를 견해 형성의 주된 매체로 삼는다. 이는 신학적 숙고보다 미디어가 매개하는 정치적 판단이 앞서는 구조를 함의한다. 다섯째, 정치적 성향과 당시 정부에 대한 태도이다. 방역 조치는 보수 교계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던 정부에서, 계엄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인식하던 정부에서 발생했다.⁵³⁾ 이 조건이 대응 차이에 작용했는지는 자료만

53) 문재인 정부 시기 보수 개신교 진영의 반정부 광장 정치에 대해서는 강인철, “한국 개신교와 보수적 시민운동: 개신교 우파의 극우·혐오정치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3 (2020), 3-30을 보라. 계엄 선포 정부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극우 개신교 진영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전광훈은 계엄을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규정하고 옹호했다. 이희균·성신형, “광장으로 나온 극단주의 개신교 세력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성찰,” 249-251. 다만 이는 주류 보수 교단의 공식 입장과 구별되는 극단적 사례이며, 주류 연합기관의 인식은 위기의 원인을 야당의 입법 폭주에 귀속시킨 성명들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 다섯 요인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비대칭성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제공하며, 본고는 이를 고려한다. 그러나 구조적 설명은 대응이 형성된 경로를 해명할 뿐, 그 대응이 카이퍼의 신학적 기준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대체하지 못한다. II장 3절에서 확인했듯, 카이퍼가 저항권 발동의 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교회 영역의 침해 여부만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정당성 상실 여부라는 것은 독립적 조건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직접성 논리는 신학적 정당화로는 불충분하다. 이 비대칭성이 사안의 성격 차이로 온전히 설명되는지를 다음 장에서 카이퍼의 이론틀에 비추어 평가한다. 이때 평가의 대상은 각 교단이 취한 정치적 입장의 타당성이 아니라, 그 대응이 스스로 원용한 신학적 원칙과 정합적인가이다.

IV. 신학적 평가와 건강한 정치 참여를 위한 대안

1. 영역주권의 한계성과 책임성 망각: 자율성과 책임의 분리

III장에서 다룬 비대칭성은 크게 두 가지 신학적 문제로 귀결된다. 첫 번째는 영역주권이 그 한계성과 책임성이 거세된 채 조건 없는 자율성으로 운용되었다는 것이다.⁵⁴⁾ 일부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영역주권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방역 수칙을 무시한 대면 예배 강행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는 카이퍼가 명시한 자율성의 전제 조건을 제거한 결과다. 카이퍼는 『반혁명 국가학』 제8장에서 각 영역이 자율성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능할 것”을 명시했다.⁵⁵⁾ 하

54) 카이퍼에게 각 영역의 자율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조건 위에서만 성립하며, 동시에 다른 영역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 안에서 행사된다. 본 절의 제목이 말하는 한계성과 책임성은 이 두 측면, 곧 자율성의 신학적 조건과 영역 간 상호 보완성을 함께 가리킨다.

55) Kuiper, 『반혁명 국가학』 1, 295.

나님의 법에는 이웃 사랑과 생명 보호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를 강행하면서 영역주권을 내세우는 것은, 자율성을 보장받는 조건 자체를 위반하는 자기모순이다.

방역 조치에 대한 국가 개입의 성격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카이퍼는 국가를 “부패를 막고 인간 삶에서 병자들의 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외과적 봉대로 규정했다.⁵⁶⁾ 팬데믹 상황에서 공중보건 조치는 이 기능의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방역 조치 자체를 영역주권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카이퍼의 국가 기능론과 충돌한다. 비판이 가능한 지점은 조치의 존재가 아니라 그 방식, 즉 교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배 방식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절차의 문제이다. 카이퍼가 강조한 영역 간 관계는 국가의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상호 자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보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동선을 이유로 국가의 종교 영역 개입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 역시 영역주권론의 취지와 담을 쌓는 것이다. 비상사태의 논리가 권력 확장의 정당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와 종교 자유의 실질적 보장 여부는 어떤 교단이든 동일하게 요구해야 할 사안이었다.

정리하면,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 개신교는 영역주권을 자율성과 책임의 결합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보수 교단은 자율성만을, 진보 교단은 공동선의 이름 아래 자율성 자체를 경시했다. 카이퍼의 관점에서 올바른 대응은 교회가 자체 방역의 책임을 이행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일방적 규제가 아닌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56) 위의 책, 327.

2. 저항권의 정치적 도구화: 이중 기준의 신학적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저항권 담론의 작동 여부가 카이퍼가 설정한 발동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III장에서 확인된 대응의 비대칭성, 즉 방역 조치에는 신속한 저항 담론이, 계엄 사태에는 침묵과 유보가 나타난 패턴은 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카이퍼는 저항권이 발동되는 두 가지 조건, 곧 국가가 교회의 자치 영역을 침범할 때와 국가가 헌법적 질서를 파괴할 때를 명시했으며,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적극적인 저항의 주체는 합법적 권위를 가진 하급 행정관에 한정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이 국회 봉쇄와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헌법적 질서 파괴라는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며, 이는 이후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사법적으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보수 교계는 이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제도적 저항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반면,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저항을 정당화했다.

물론 III장 4절에서 검토했듯, 계엄이 교회의 고유 영역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응 강도의 차이를 일정 부분 설명하며, 교회가 자기 영역 밖의 사안에 신중한 것이 오히려 영역 구분에 충실한 태도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반론은 세 가지 점에서 카이퍼의 저항권 이론의 구조를 간과한다. 첫째, 저항권 발동의 두 번째 조건인 헌법적 질서의 파괴는 교회 영역의 침해를 전제하지 않는 독립적 조건이다. 교회 영역이 무사하다는 사실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판단 유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둘째, 이 국면에서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정치 세력화나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하급 행정관에 상응하는 합법적 기관들(국회, 헌법재판소)이 수행하는 제도적 저항이 하나님의 법과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를 증언하는 역할이다. 침묵은 이 역할에 대한 중립이 아니라 판단의 유보라는 하나의 선택이며, 방역 국면에서 보여준 신속하고 강력한

담론 동원과의 낙차 속에서 그 선택의 성격이 드러난다. 셋째, 계엄 당시의 유보를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잠정적 신중함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종국 판단 이후에도 공식적인 신학적 성찰이나 입장 정리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러한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두 사례에 걸쳐 나타난 이 비대칭성은, 저항권 발동의 기준이 카이퍼가 제시한 객관적 조건보다 당시 정부에 대한 교계의 태도와 더 밀접하게 연동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저항권 담론은 신학적 원칙의 일관된 적용이라기보다 상황적 판단의 산물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 교계는 탄핵이 또 다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우려 자체가 부당한 논거는 아니다. 카이퍼 자신도 저항이 적극적 공격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저항의 방식에 관한 것이지, 저항권 발동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이 이중 기준이 갖는 신학적 함의는 명확하다. 동일한 원칙이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신학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다. 카이퍼가 저항권을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정립한 것은 바로 이러한 도구화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3.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원칙

카이퍼의 사상은 19세기 네덜란드의 입헌군주제와 기독교 다수 문화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현대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된 다종교 사회다. 이 차이는 카이퍼 사상의 한국적 적용이 이론의 이식이 아니라 원칙의 재구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재구성 과제는 영역주권의 주체 확장이다. 한국 개신교는 자신의 영역주권을 주장하면서도 타 종교와 시민사회 조직의 동등한 자

율성을 전제로 삼지 않았다. 카이퍼는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의 풍요로운 다양성을 창조하셨다고 강조하면서, 이 다원성이 창조주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⁵⁷⁾ 이 논리에 따르면 영역주권은 개신교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종교 공동체, 가정, 학교, 조합, 단체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편 원칙이다. 자신의 영역주권을 주장하면서 타 집단의 영역주권을 배제하는 것은 카이퍼 자신의 논리와 모순된다.⁵⁸⁾

두 번째 재구성 과제는 저항권 주체의 민주적 확장이다. 카이퍼의 하급 행정관 이론은 귀족, 지방의회 등 중간 권력을 전제로 형성되었다. 민주 공화국에서 하급 행정관에 상응하는 기관은 의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지방정부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실제로 12.3 계엄 국면에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와 탄핵소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카이퍼적 의미의 제도적 저항이 현대 민주주의의 헌법 기관들을 통해 구현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기관들이 행정권의 위헌적 남용에 맞서 제도적 기능을 수행할 때, 교회는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의 한계와 위반 여부를 성경적, 신학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이 역할은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 재구성 과제는 책임적 자율성의 제도화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율성을 관계적 책임과 공동선의 지평으로 확장하는 과제다. 카이퍼에게 각 영역의 주권은 배타적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적 위임이다. 따라서 교회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향한 섬김을 위한 적극적 자유로 완성된다. 카이퍼가 일반은총 교리를 통해 강조했듯, 하나님의 은총은 교회의 담장

57) 카이퍼 사상에서 창조의 다양성이 갖는 중심적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ichard J. Mouw,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11), 17-33; Cory C. Brock and N. Gray Sutanto, *Neo-Calvinism: A Theological Introduction* (WA: Lexham Academic, 2022), 46-50.

58) 이국운,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138.

안에 갇히지 않고 인류의 공동 삶 전체를 보존하고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⁵⁹⁾ 이 관점에서 영역주권의 윤리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에서 교회의 자율성 주장은 공동선에 대한 가시적 기여로 뒷받침될 때 공적 설득력을 가진다. 자체 방역의 모범과 지역사회 돌봄이 그러한 기여에 해당한다. 헌정 질서의 위기에서 교회의 증언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헌법 질서라는 공공재 자체를 향할 때 예언자적 성격을 유지한다. 요컨대 교회의 자율성 주장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무엇을 위한 자유’로 확장될 때 비로소 카이퍼적 의미의 영역주권에 부합한다. 투명한 재정 운영, 내부 윤리 기준의 실질적 이행, 공동체 봉사를 통한 공익 기여는 이러한 영역주권 주장의 도덕적 토대를 형성한다. 교회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국가 개입의 명분은 그만큼 강화된다. 역으로 교회가 타자를 향한 관계적 책임을 실천할 때, 자율성 주장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유를 확장하는 논거가 된다.

카이퍼는 브래티 평가하듯 진보적 해방과 보수적 전통을 통합하는 정치적 비전을 지녔다.⁶⁰⁾ 한국 개신교가 그의 사상에서 취사 선택하지 않고 이 통합의 원리를 수용한다면, 정파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모든 권력을 향해 동일한 기준으로 선포하는 예언자적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본고는 영역주권과 저항권 개념이 일관된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59) Kuyper, *Common Grace*, 3:102 이하 참조. 일반은총 교리는 신자로 하여금 교회 밖의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존적 사역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신학적 근거가 된다.

60) Bratt, *Abraham Kuyper*, xiii.

아니면 상황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12.3 비상계엄이라는 두 대조적 사례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가 일관된 신학적 원칙보다는 이슈의 직접성, 정치적 판단, 담론의 효용성, 안정성 우선주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물론 이 비대칭성에는 사안의 직접성, 교단 구조, 지도자의 영향력, 미디어 환경 등 복수의 요인이 중첩되어 작용했다. 본고의 결론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카이퍼의 신학적 기준에 비추어 정당화가 될 수 없음을 논증한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단순한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이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영역주권을 절대적 자율성으로 오해하고 그 한계성과 책임성을 간과한 것, 저항권을 정치적 맥락에 따라 이중 잣대로 적용한 것은 카이퍼 사상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다. 카이퍼에게 영역주권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책임적 자율성이었고, 저항권은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적 정당성 위반 시 발동되는 원칙이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카이퍼 연구의 지평을 이론에서 실천으로 확장했다. 둘째, 교단 공식 성명 등에 기초한 대조적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 개신교 정치 참여의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셋째, 서구 신학 사상의 한국적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적 변형과 왜곡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본고가 제시하는 건 강한 정치 참여의 핵심 원칙은 명확하다. 영역주권은 교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보편 원칙이며, 자율성에는 타자를 향한 관계적 책임이 따른다. 저항권은 정부의 정치적 색깔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제도적 수단을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첫째, 분석이 두 사례로 제한되어 여기서 확인된 비대칭성을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 전반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보수 교단과 진보 교단이라는 범주가 교계 내부의 다양성(공식 입장과 일반 신자 인식의 간극, 복음주의권 내부의 이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셋째, 공식 성명서를 주된 자료로 삼은 결과, 성명 발표에 이르는 내부 논의 과정과 공식 문서가 부재한 침묵의 내적 동기는 확정할 수 없다. 향후 연구는 더 다양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교계 대응을 추적하고, 개별 교회와 신자들의 미시적 차원의 정치 참여 양상을 심층 면접 등 질적 방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카이퍼 외에 다른 정치신학 전통과의 비교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한국 개신교회는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일관된 신학적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 카이퍼의 영역주권론과 저항권 개념은 이를 위한 유용한 신학적 자원이지만, 그것이 한국 교회의 건강한 정치 참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균형 잡힌 의미를 회복하고 한국적 맥락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신학적 성찰과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기독교대한감리회. “비상계엄 즉각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4일.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145>,
2026.05.01. 접속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대한 법률적, 정
치적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4일. [https://cemk.org/
39344/](https://cemk.org/39344/), 2026.05.01. 접속
- 김영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한국기독교(비상계엄선포의 법적 고찰 포함).” 제
107회 월례학술포럼: 한국의 민주정치, 법치, 한국 기독교. 기독교학술원 포
럼 자료집, 2025년 1월 17일, 22-43.
- 김영한.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신칼빈주의적 도전이
다.”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 그 현대적 의미」. 기독교학술원, 온누리교회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 자료집, 2020년 11월 26일, 15-45.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현 시국에 대한 총회장 성명서.” 2024년 12월 4일.
전문은 「컵뉴스」 2024.12.4.자에 수록. [https://www.cupnews.kr/news/ar-
ticleView.html?idxno=25568](https://www.cupnews.kr/news/ar-
ticleView.html?idxno=25568), 2026.05.01. 접속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국가 비상계엄령 사태에 즈음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성명서.” 2024년 12월 4일.
- 정성구. “영역주권(領域主權).”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 그 현대적 의미」. 기독
교학술원, 온누리교회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 자료집, 2020년 11
월 26일, 7-1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논평)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교회와 행정당국의 상
호이해를 촉구한다’ 보도 요청의 건.” 2020년 3월 19일. [http://www.ncck.
or.kr/newsView/knc202003190002](http://www.ncck.
or.kr/newsView/knc202003190002), 2026.05.01. 접속
- _____. “대통령 윤석열-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24년 12월 4일.
<https://www.kncc.or.kr/newsView/knc202412040002>, 2026. 05.01. 접속
-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성명. 2024년 12월 4일. 전문은 뉴스앤조이 편, “윤석열 대
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계 성명 모음”에 수록.
-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

•단행본 및 논문

- 강인철. “한국 개신교와 보수적 시민운동: 개신교 우파의 극우, 혐오정치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3(2020), 3-30.
- 박재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반혁명 국가학』에 나타난 국가와 교회의 바른 관계성 고찰.” 『한국개혁신학』 88(2025), 150-184.
-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의 현대적 의의: 교회와 국가 관계의 관점에서.” 『갱신과 부흥』 28(2021), 215-248.
- 백광훈. “2024.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 〈개신교인의 정치문화 형성과 지형〉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62(2025), 159-196.
-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 『신국론』, 제19-22권. 왜관: 분도출판사, 2004.
- 이국운.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3(2013), 127-155.
- 이훤균, 성신행. “광장으로 나온 극단주의 개신교 세력에 대한 기독교 사회 윤리적 성찰: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62(2025), 239-259.
- 최용준.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관에 관한 고찰: 반혁명적 국가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8/1(2023), 297-314.
- 황대우. “아브라함 카이퍼의 초기 정치사상: 1880년의 Ons Program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7/1 (2025), 103-130.
- Bolt, John. *A Free Church, A Holy Nation: Abraham Kuyper's American Publ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1.
- Bratt, James D.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2013.
- _____. “Abraham Kuyper and the French revolution.” In *Neo-Calvinism and the French Revolution*, edited by James Eglinton and George Harinck, 1-12.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4.
- Brock, Cory C., and N. Gray Sutanto. *Neo-Calvinism: A Theological Introduction*. Bellingham, WA: Lexham Academic, 2022.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 Gatis, G. Joseph. “The Political Theory of John Calvin.” *Bibliotheca Sacra*.

153(1996), 450-468.

Innes, David C. *Christ and the Kingdoms of Men: Foundations of Political Life*.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19.

Kuyper, Abraham.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Edited by James D. Bratt. Grand Rapids: Eerdmans, 1998.

_____.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Eerste Deel: De Beginselen*. Kampen: J. H. Kok, 1916-1917. 최용준 · 임경근 공역. 『반혁명 국가학 1』.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23.

_____.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The Practical Section*. Vol. 3. Edited by Jordan J. Ballor, J. Daryl Charles, and Melvin Flikkema. Translated by Nelson D. Kloosterman and Ed M. van der Maas. Abraham Kuyper Collected Works in Public Theology. Bellingham: Lexham Press, 2020.

_____.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1880. 박태현 역.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군포: 다함출판사, 2020.

Mouw, Richard J.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11.

Rousseau, Jean-Jacques. "A 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 (1755) and the Social contract (1762)." In *The Christian Intellectual Tradition from the Reformation to the Modern Era: A Reader and Companion*, 253-263.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25.

논문투고일: 2026년 07월 08일

심사개시일: 2026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6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과 저항권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현대 한국 개신교의 정치 참여가 일관된 신학적 원칙에 기초하는지를 검토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2020-2021)와 12·3 비상계엄(2024)을 대조 사례로 선정하고, 교단과 연합기관의 공식 성명서, 학술포럼 자료집,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 1차 자료를 중심으로 각 국면에서 동원된 신학적 담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뚜렷한 비대칭성이 확인되었다. 주요 보수 교단과 연합기관은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영역주권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동원한 반면, 헌정 질서의 위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본고는 이 차이가 구조적 요인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영역주권의 책임성과 저항권의 보편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됨을 논증하고, 영역주권 주체의 보편적 확장, 저항권 적용의 일관성, 책임적 자율성의 제도화를 한국적 재구성 원칙으로 제안한다.

주제어: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주권, 저항권, 한국 개신교, 정치 참여
